

대학원 과학교육학과 운영 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과학교육학과와 학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

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과학교육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 또한 내규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내용은 모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.

제2장 입학관리

제3조 (우수학생의 유치)

과학교육학과 소속 교수들은 과학교육학과 석·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제3장 자격시험

제4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

- ① 일반대학원 과학교육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과학교육학과 내규에 따라 종합학력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,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기간에 증빙이 가능해야한다.
- ②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종합학력시험 면제 자격을 부여한다.
 1.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(교신저자, 제 1저자 포함) 논문게재 1편

* 인정 학술지: 등재후보지, 등재지, SCOPUS, SCI(E)/SSCI급 학술지

③ 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종합학
력시험 면제자격을 부여한다.

1.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(교신저자, 제 1저자 포함) 논문게재 1편

* 인정 학술지: 등재지, SCOPUS, SCI(E)/SSCI급 학술지

** 학위논문제출자격 논문과는 별도

제5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

①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석사학위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공분야의 학력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전임
교원의 2개 과목으로 한다.

2. 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공분야의 학문적 심도를 종합
평가할 수 있는 전임교원의 4개 과목으로 한다.

3.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전임교원의 담
당과목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, 지도교수의 과목은 최대 1개 선택 가능하다.

②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선택한 과목의 담당교수가 종합학력
시험 과목의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며, 모든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출제한다.

2. 종합학력시험의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.

제6조 (외국어시험 과목)

①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 1학기를 이수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. 다만, 편입학의
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② 외국어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내국인 학생은 영어과목만 응시 가능하다.

2. 외국인 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 중에 선택가능하며, 영어 선택은 영어가 모국어가
아닌 학생만 선택가능하다.

③ 외국어시험의 면제조건은 일반대학원 학칙 및 시행제칙을 따른다.

제4장 학위과정

제7조 (석사학위 과정 선택)

과학교육학과의 석사학위 취득방법은 학위논문만을 인정한다.

제8조 (석사학위 과정의 변경)

과학교육학과의 석사학위 취득방법은 학위논문만을 인정한다. 따라서,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불가하다.

제5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제9조 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

-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위 취득학기 중 학과 교수님과 일반대학원 과학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계획서를 발표해야하며, 이를 예비발표로 대체한다.
- ② 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학위 논문 심사 청구 6개월 전에 논문 Proposal을 발표하고, 피드백을 받아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 대학원 주임교수 주재로, 학과 교수님 참석 하에서 연구계획서 발표를 진행한다.
- ③ 연구계획서 발표의 심사통과여부는 지도교수가 결정한다.

제10조 (예비발표)

-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학과 교수님과 일반대학원 과학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표를 진행한다. 또한, 별도의 발표회 또는 단국대 과학교육연구회에서 발표 할 수 있다.
- ② 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학과 교수님과 일반대학원 과학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표를 진행한다. 또한, 별도의 발표회 또는 단국대 과학교육연구회에서 발표 할 수 있다.
- ③ 예비발표의 통과여부는 내부 심사위원이 결정한다.

제11조 (논문심사위원)

- ①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주임교수가 추천한다.
- ② 논문심사위원에는 지도교수가 포함되어야 하며,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.
- ③ 학위과정에 따른 논문심사위원의 인원은 일반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.

제6장 학과 운영위원회

제12조 (의사결정 방식)

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0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